

의 회 의 견 청 취 안

의안 번호	126
----------	-----

제출년월일 : 2012. 2. 23
제 출 자 : 평창군수(산림과장)

1.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2009년 5월 『산림수도 평창』 선포하고,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특화사업의 발굴 대두
-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특구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참여 및 유치 활성화를 위해 평창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 특구 지정을 추진
- 산림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 특구 지정 신청안에 대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특구의 명칭

- 평창 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 특구

나. 특구의 위치와 면적

- 평창군 봉평면(무이리, 창동리), 진부면(동산리), 방림면(계촌리) 등 6개 지역, 1,129,592㎡

다. 특구의 대외적 표시방법

- 국문: 평창 포레스토피아 산림휴양 특구
- 영문: Pyeongchang Forestopia:Forest Recreation Special Zone

라. 특구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필요성

- ‘산림수도 평창’의 위상 확립 필요성
- 동계올림픽과의 연계한 산림휴양산업 기반 구축 필요성
- 산림자원 특화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북 균형 발전 필요성

○ 기대효과

- 평창 산림수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규제특례 등 특화사업 실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미개발지역의 적극적인 자원 활용으로 지역 균형발전 토대 마련
- 산림휴양 특구의 총 사업비는 390.590억 원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746억원, 부가가치파급효과 330억원으로 1,07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861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

마. 주요 특화사업명 및 위치

- HAPPY700 자연휴양림
 - 봉평면 무이리 일원 - 546,625㎡
- 효석문학의 숲
 - 봉평면 창동리 일원 - 516,594㎡
- 오대산 치유명상센터
 - 진부면 동산리 일원 - 4,664㎡
- 산림문화 테마파크
 - 방림면 계촌리 일원 - 7,400㎡
- 숲속 비밀의 정원
 - 방림면 계촌리(창수동) 일원 - 55,309㎡
- 효석문학 100리길
 - 이효석 생가-평창초등학교(76km)

바. 자원조달 계획

특화사업명	재원별사업비(억 원)				
	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계	390.592	191.296	89.098	110.198	0.000
HAPPY700 자연휴양림	38.800	15.400	7.700	15.700	0.000
효석문학의 숲(공원)	33.980	16.990	8.495	8.495	0.000
오대산 치유명상센터	200.000	100.000	50.000	50.000	0.000
산림문화 테마파크	50.000	25.000	12.500	12.500	0.000
숲속 비밀의 정원	65.560	32.780	9.840	22.940	0.000
효석문학100리길	2.252	1.126	0.563	0.563	0.000

3. 참고사항

○ 공 고 : 2012. 2. 16 (군보, 홈페이지)

○ 주민공람 : 2012. 2. 17 ~ 3. 7

-

○ 주민공청회 개최 : 예정

- 오대산 치유명상 센터

·일시: 2012. 3. 8, 09:00

·장소: 월정사 동별당

- 효석문학의 숲

·일시: 2012. 3. 8, 10:30

·장소: 창동 4리 마을회관

- HAPPY700 자연휴양림

·일시: 2012. 3. 8, 11:30

·장소: 봉평면 무이2리 체험관

- 산림문화 테마파크

·일시: 2012. 3. 8, 10:00

·장소: 방림면 계촌2리 마을회관

- 숲속 비밀의 정원

·일시: 2012. 3. 8, 11:00

·장소: 방림면 계촌리 수동분교(구)

평창포레스트피아 산림휴양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 회 의 건 청 취 안

1 특구의 명칭: 평창 포레스트피아 산림휴양 특구

□ 산림(FOREST)과 이상향(UTOPIA)의 합성어

- 휴양, 치유, 레저, 문화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유토피아 공간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내포
-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휴양 및 치유산업' 측면에서의 특화사업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마련

2 특구의 위치와 면적

□ 평창군 봉평면(무이리, 창동리), 진부면(동산리), 방림면(계촌리) 등 6개 지역(1,129,592m²)

	1 HAPPY700 자연휴양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봉평면 무이리 일원 ■ 면적: 545,625m², 2필지
	2 효석문학의 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봉평면 창동리 일원 ■ 면적: 516,594m², 2필지
	3 오대산 치유명상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진부면 동산리 일원 ■ 면적: 4,664m², 1필지
4 산림문화 테마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방림면 계촌리 일원 ■ 면적: 7,400m², 1필지 	
5 숲속 비밀의 정원(수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방림면 계촌리 일원 ■ 면적: 55,309m², 25필지 	
6 효석문학100리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이효석생가-평창읍 ■ 면적: 76km 	

3 특구의 대외적 표시방법

□ 표시방법: 평창 포레스트피아 산림휴양 특구

Pyeongchang Forestopia · Forest Recreation Special Zone

4 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특구의 지정 목적

○ '산림수도 평창'의 위상 제고

- 평창군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2009년에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였으며, 산림수도 실현을 위한 산림휴양산업 발전 계획 필요
- 평창군 내 부족한 산림자원의 효과적 이용과 부가가치 증대 방안, 지역 산림휴양 및 치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
- * 평창군은 군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및 휴양 시설들은 미흡한 실정임.

○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적 패러다임에 대응

- 국가적 패러다임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변화하면서 산림자원의 중요성 및 이용 증대를 위한 지역발전 계획 미흡한 실정

○ 산림휴양 수요의 확대에 대응

-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87%에 달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산림치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
- 현재기온에서 6℃까지 상승할 경우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¹⁾, 한반도는 지난 100년간 1.7℃ 상승한 것을 감안할 경우 향후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1) 경북대학교, 한상열 「기후변화가 산림휴양수요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9.

- 만성질환과 환경성 질환에 대한 산림치유 효과 극대화²⁾
 - 경증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2박 3일 숲체험 캠프를 실시한 후, 8주간 숲에서 자가운동을 실시하도록 한 뒤 혈압을 측정한 결과,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 확인.
 - 부정맥 환자와 환경성 질환 소아환자에 대한 임상실험과 급성관절염에 대한 동물실험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고, 불안장애와 우울증 그리고 사회적 건강증진 등에 적용 가능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활용한 심리치료활동도 개발되고 있음.
 - 평창군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숲치유 효과 극대화 및 숲치유 수요에 대응

특구지정의 정책적·경제적 필요성

1) 정책적 필요성

- ‘산림수도 평창’의 위상 확립 필요성
 -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융합하여 평창군 발전 비전인 “산림수도 평창”에 걸맞는 산림휴양산업 및 생태관광자원 개발 필요
 -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지로서 선도적 지위 확보
- 동계올림픽과의 연계한 산림휴양산업 기반 구축 필요성
 - 남부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특구 지정을 통하여 산림휴양 및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자리 잡는다면 사계절 관광과 휴양이 가능한 지역개발 모델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지역 주민소득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리적·자연적 어메니티를 활용한 특화발전이 필요함.

2) 경제적 필요성

- 산림자원 특화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

2) 국립산림과학원, 김통일 「산림지 2012. 1」

- 평창군 지방세 징수액은 2010년 518억 원으로 2007년대비 30% 감소
- 풍부한 산림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는 생태관광의 중심도시지만, 개발에는 제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어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북 균형 발전 필요성

- 북부권에는 휴양 리조트, 국립공원, 계곡, 펜션, 관광목장 등 관광자원이 위치해 있어 관광객의 95%가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음.
- 특화사업예정지인 방림, 봉평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태관광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남북간 지역불균형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 필요함.

특구지정의 기대효과

1) 평창 산림수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

- 특구의 지정과 특화사업의 실행은 '산림수도 평창' 10개년 육성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평창지역이 산림휴양산업의 중심권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임.

2) 규제특례 등 특화사업 실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특화사업(HAPPY700 자연휴양림, 효석문학의 숲, 오대산 치유명상센터, 산림문화 테마파크, 숲속 비밀의 정원(수목원),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에 있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그 결과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등 지역 산림휴양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

3) 미개발지역의 적극적인 자원 활용으로 지역 균형발전 토대 마련

- 남부권역에 부존하는 잠재적 산림자원(계곡, 산림, 목재 등)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5] 특화사업

특화사업의 명칭 및 주요내용

특화사업명	사업내용	
	기완공 시설	향후 추진내용
HAPPY700 자연휴양림	숲속체험관,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운동장	테마숲 조성, 전망데크, 계곡정비, 스카이 로드, 테라피 로드 조성 등
효석문학의 숲(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평 장터, 충주집, 물레방아, 연못, 전망대 등 야외 문학 체험 시설 · 자연관찰로(데크, 목교, 산책로 등) · 의자, 문학안내판, 수목안내판, 방향 표지판 등 설치 · 등산로 개설(3개소) 	테마숲 조성, 도토리 숲 조성 주민소득 연계
오대산 치유명상센터		치유명상센터 건립, 치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산림문화 테마파크		산림문화전시관, 목공예체험시설, 야외공연장 건립
숲속 비밀의 정원		탐방로 정비, 비밀의 정원·치유 정원 조성, 이끼폭포 쉼터 야생화미로 조성, 주차장 조성
효석문학100리길		메밀꽃 필 무렵'을 소재로 한 걷는 길 정비, 기존도로에 메밀꽃 테마를 추가하여 안내표지판, 표지석 등 설치, 지역생산품 연계 판매

1) HAPPY700 자연휴양림

○ 자연휴양림은 산림 내 체류하면서 휴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시설만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임. 자연자원 중심의 이용과 저밀도 개발, 자연학습장 등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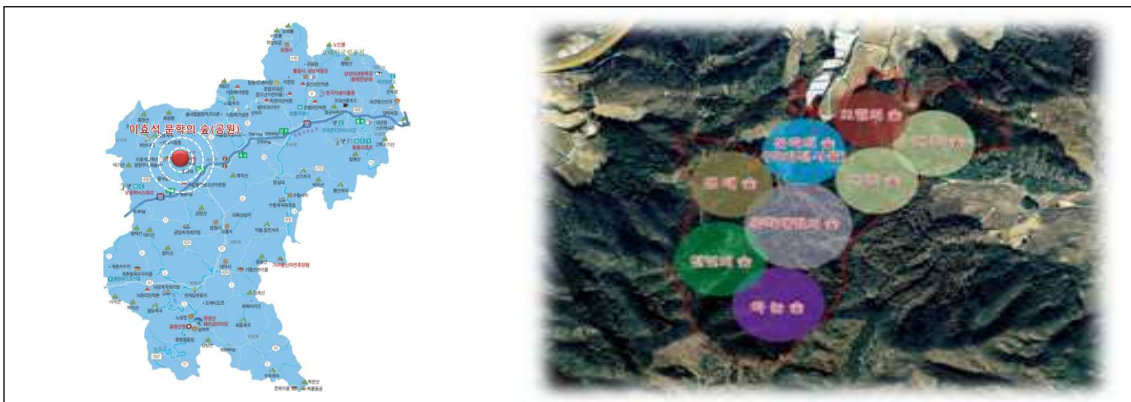
※ 본 사업은 확정·시공된 사업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요구하지 않음. 다만 세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



2) 효석문학의 숲

○ 문학적 분위기를 창출해 내는 테마숲을 조성하여 국민들이 자연 속에서 한국문학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공간임. 문학체험의 숲, 효석의 숲, 생태숲, 건강숲, 모험숲, 하늘숲, 천연의 숲 등 테마에 맞는 교양 및 휴양시설을 제공

※ 본 사업은 기 확정·시공된 문학의 숲 시설구역과 배후 도시숲 지역의 활용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음.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한 간이시설, 프로그램 등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



3) 오대산 치유명상센터

○ '치유의 도시'로서 평창의 이미지 및 브랜드를 창출하고 마음치유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의 기초 공간을 제공하고, 자연, 음식, 예술을 통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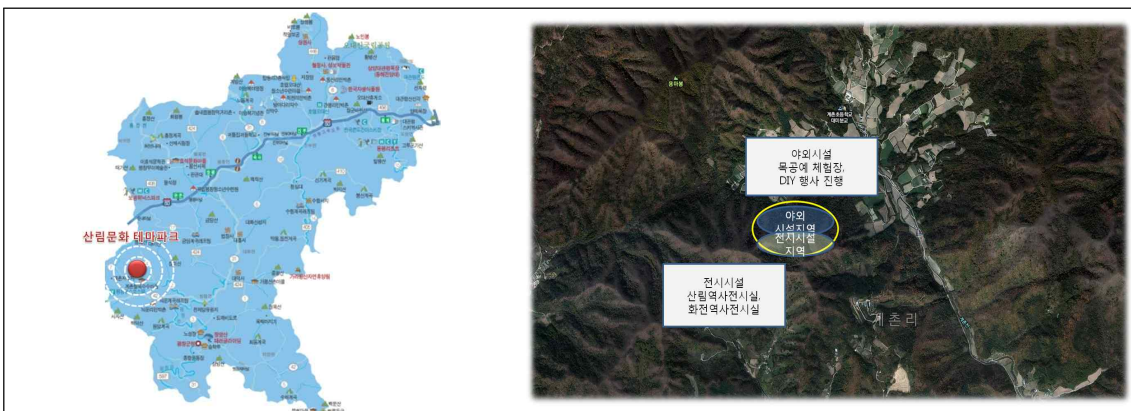
※ 기 수립된 오대산 기본계획 중 1단계로서 오대산 치유명상센터 개발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함. 명상치유, 자연 치유, 음식 치유, 예술 치유 등 프로그램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



4) 산림문화 테마파크

○ 평창군 산림문화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산림문화의 대중적 접근을 위한 공간으로서, 단순히 경관이나 명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 프로그램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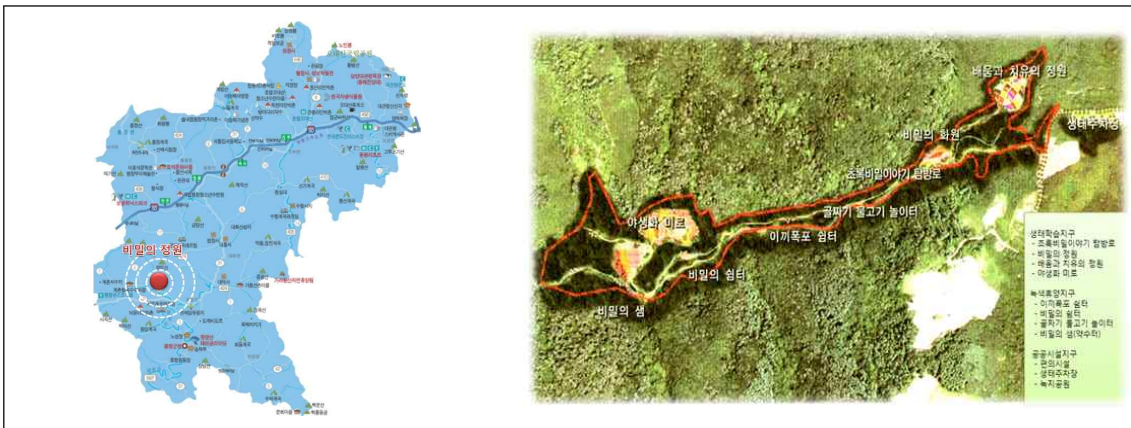
※ 산림문화 테마파크는 신규 사업으로 2012년 현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국비 확보계획임. 산림문화전시관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



5) 숲속 비밀의 정원(수목원)

- 창수동 계곡 일대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시설 중심이 아닌 프로그램 중심의 생태관광·체험을 위한 공간임.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 명상 수행, 삼림욕, 문화 이벤트, 정원 경관, 야생화 가꾸기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 본 사업은 공립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산림청에 2013년 예산신청 중에 있음. 또한 문화관광부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기본 구상에 반영된 사항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음.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특례를 적용



6) 효석문학100리길

- 이효석 생가와 평창읍을 연결하는 코스로 '메밀꽃 필 무렵'과 연계된 다양한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엮은 구간별 걷기 코스를 제공함.

※ 본 사업은 면적 개발사업과는 달리 선형으로 구성되며, 주로 등산로, 조림, 시설보완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걷기 대회, 안내간판 등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



특화사업의 투자계획

○ 특화사업의 전체 투자액은 총 390.592억 원임.

- HAPPY700 자연휴양림에 38.8억 원, 효석문학의 숲에 33.98억 원, 오대산 치유명상센터에 200억 원, 산림문화 테마파크에 50억 원, 숲속 비밀의 정원(수목원)에 65.56억 원, 효석문학100리길에 2.252억 원이 투자될 예정임.

<연도별 투자계획>

특화사업명	연도별 사업비 (억 원)					
	계	2012년 이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90.592	49.216	104.840	136.056	97.680	2.800
HAPPY700 자연휴양림	38.800	22.486	2.464	10.150	2.900	0.800
효석문학의 숲(공원)	33.980	23.980	4.000	2.000	2.000	2.000
오대산 치유명상센터	200.000	2.500	72.500	77.500	47.500	0.000
산림문화 테마파크	50.000	0.250	14.750	17.500	17.500	0.000
숲속 비밀의 정원	65.560	0.000	10.000	27.780	27.780	0.000
효석문학100리길	2.252	0.000	1.126	1.126	0.000	0.000

<재원별 투자계획>

특화사업명	재원별 사업비 (억 원)				
	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계	390.592	191.296	89.098	110.198	0.000
HAPPY700 자연휴양림	38.800	15.400	7.700	15.700	0.000
효석문학의 숲(공원)	33.980	16.990	8.495	8.495	0.000
오대산 치유명상센터	200.000	100.000	50.000	50.000	0.000
산림문화 테마파크	50.000	25.000	12.500	12.500	0.000
숲속 비밀의 정원	65.560	32.780	9.840	22.940	0.000
효석문학100리길	2.252	1.126	0.563	0.563	0.000

[6] 특화사업자

- 성 명 : 평창군수
- 주 소 : (평창군)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7] 특구토지이용계획(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8] 규제특례사항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1) HAPPY700 자연휴양림

구분	규제특례사항	규제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일반 규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2조)	- 통행의 금지 및 제한(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고유권한)	- 행사시 사고방지, 교통안전, 방문객의 통행로 확보 필요	-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도로통행 제한 등 조치 요청할 수 있음 - HAPPY700자연휴양림 주변(국도 6호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3조)	-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주변, 한변10m이상,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은 허가사항	- HAPPY700자연휴양림의 선전탑 및 광고관 설치를 통해 탐방객 유도	- HAPPY700자연휴양림 주변 - 영동고속도로 장평IC - 국도 6호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1조)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시 3개월 이상 통보 - 보건복지부령 공고방식 이행	-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적용 필요	- 통보기간 2개월 이상 - 통보 및 공고(보건복지부령)에 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2) 효석문학의 숲

구분	규제특례사항	규제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일반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2조)	- 통행의 금지 및 제한(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고유권한)	- 행사시 사고 방지, 교통 안전, 방문객의 통행로 확보 필요	-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도로통행 제한 등 조치 요청할 수 있음 - 효석문학의 숲 주변 국도(6번 국도)
규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3조)	-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주변, 한변10m이상,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은 허가사항	- 효석문학의 숲의 선전탑 및 광고판 설치를 통해 탐방객 유도	- 효석문학의 숲 주변 - 영동고속도로 장평IC - 국도 6호선

3) 오대산 치유명상센터

구분	규제특례사항	규제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일반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2조)	- 통행의 금지 및 제한(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고유권한)	- 행사시 사고 방지, 교통 안전, 방문객의 통행로 확보 필요	-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도로통행 제한 등 조치 요청할 수 있음 - 오대산 치유명상센터 주변 국도(6번 국도)
규제 특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3조)	-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주변, 한변10m이상,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은 허가사항	- 오대산 치유명상센터의 선전탑 및 광고판 설치를 통해 탐방객 유도	- 오대산 치유명상센터 주변 - 영동고속도로 진부IC - 국도 6호선

4) 산림문화 테마파크

구분	규제특례사항	규제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일반 규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2조)	- 통행의 금지 및 제한(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고유 권한)	- 행사시 사고 방지, 교통 안전, 방문객의 통행로 확보 필요	-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도로통행 제한 등 조치 요청할 수 있음 - 산림문화 테마파크 주변(지방도 420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3조)	-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주변, 한변10m이상,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은 허가사항	- 선전탑 및 광고판 설치를 통해 탐방객 유도	- 산림문화 테마파크 주변 - 영동고속도로 둔내IC - 국도 42번, 지방도 420번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7조의 2)	- 산지전용허가 요건 중 보전산지가 100분의 10이하 일 것(대통령령)	- 보전산지 편입에 따른 개발행위 특례 적용 필요	- 보전산지 편입 비율 그 상한의 150% 적용(보전산지 비율 100분의 15이하 적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1조)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시 3개월 이상 통보 - 보건복지부령 공고방식 이행	-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적용 필요	- 통보기간 2개월 이상 - 통보 및 공고(보건복지부령)에 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5) 숲속 비밀의 정원(수목원)

구분	규제특례사항	규제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일반 규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2조)	- 통행의 금지 및 제한(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고유권한)	- 행사시 사고 방지, 교통 안전, 방문객의 통행로 확보 필요	-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도로통행 제한 등 조치 요청할 수 있음 - 숲속 비밀의 정원 주변(지방도 420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3조)	-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주변, 한변10m 이상,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은 허가사항	- 선전탑 및 광고판 설치를 통해 탐방객 유도	- 숲속 비밀의 정원 주변 - 영동고속도로 둔내IC - 국도 42번, 지방도 420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27조)	- 공익적기능 증진을 위한 임도 설치시 산림청장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	- 초록비밀이야기 탐방로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해 필요	- 특구관할지자체장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7조의 2)	- 산지전용허가요건 중 보전산지가 100분의 10이하 일 것(대통령령)	- 보전산지 편입에 따른 개발행위 특례 적용 필요	- 보전산지 편입 비율 그 상한의 150% 적용(보전산지 비율 100분의 15이하 적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1조)	-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시 3개월 이상 통보 - 보건복지부령 공고방식 이행	-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적용 필요	- 통보기간 2개월 이상 - 통보 및 공고(보건복지부령)에 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제36조의 2)	- 매각가능 국유재산은 일 반 경쟁입찰로 매각	- 특화사업 지역내 국유림 활용시 필요	- 매각가능 국유재산을 총괄청과 협의후 수의계약으로 매입 가능

6) 효석문학100리길

구분	규제특례사항	규제사항	필요성	적용범위
일반 규제 특례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2조)	- 통행의 금지 및 제한(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고유 권한)	- 행사시 사고 방지, 교통 안전, 방문객의 통행로 확보 필요	-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도로통행 제한 등 조치 요청할 수 있음 - 국도 31호선 주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례법 제23조)	- 고속도로, 국도 등 도로주변, 한변10m이상,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은 허가사항	- 선전탑 및 광고설치를 통해 탐방객 유도	- 효석문학 100리길 주변 - 영동고속도로 장평IC - 국도 31번 주변

[9] 재원조달방법

특화사업명	연도별 사업비(백만 원)							재원확보 계획
	합 계		2012년 이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계	39,059.2	4,921.7	10,484.0	13,605.7	9,768.0	280.0	
	국비	19,129.6	2,473.3	5,629.5	6,952.8	3,934.0	140.0	
	도비	8,909.8	1,211.7	2,339.8	2,649.0	2,639.5	70.0	
	군비	11,019.8	1,236.7	2,514.8	4,004.0	3,194.5	70.0	
	민간	0.0	0.0	0.0	0.0	0.0	0.0	
HAPPY700 자연휴양림	계	3,880.0	2,248.7	246.4	1,015.1	290.0	80.0	본 사업의 주요 건축시설은 완료 되었으며, 운영단 계에 필요한 보완 등이 남아 있음.
	국비	1,540.0	1,124.3	123.2	107.5	145.0	40.0	
	도비	770.0	562.2	61.6	53.8	72.5	20.0	
	군비	1,570.0	562.2	61.6	853.8	72.5	20.0	
	민간	0.0	0.0	0.0	0.0	0.0	0.0	
효석 문학의 숲	계	3,398.0	2,398.0	400.0	200.0	200.0	200.0	주요 시설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배 후 도시숲에 대한 시설 보완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집 행 예정
	국비	1,699.0	1,199.0	200.0	100.0	100.0	100.0	
	도비	849.5	599.5	100.0	50.0	50.0	50.0	
	군비	849.5	599.5	100.0	50.0	50.0	50.0	
	민간	0.0	0.0	0.0	0.0	0.0	0.0	
오대산 치유명상센터	계	20,000.0	250.0	7,250.0	7,750.0	4,750.0	0.0	본 사업은 기 확 정 예산사업으로, 일부 사업비가 집 행단계에 있음.
	국비	10,000.0	150.0	3,950.0	4,450.0	1,450.0	0.0	
	도비	5,000.0	50.0	1,650.0	1,650.0	1,650.0	0.0	
	군비	5,000.0	50.0	1,650.0	1,650.0	1,650.0	0.0	
	민간	0.0	0.0	0.0	0.0	0.0	0.0	
산림문화 테마파크	계	5,000.0	25.0	1,475.0	1,750.0	1,750.0	0.0	신규 사업으로, 국비사업 신청을 통해 재원 조달 예정이며, 현재 기본구상 용역 수 립 중에 있음.
	국비	2,500.0	0.0	800.0	850.0	850.0	0.0	
	도비	1,250.0	0.0	350.0	450.0	450.0	0.0	
	군비	1,250.0	25.0	325.0	450.0	450.0	0.0	
	민간	0.0	0.0	0.0	0.0	0.0	0.0	
숲속 비밀의 정원 (수목원)	계	6,556.0	0.0	1,000.0	2,778.0	2,778.0	0.0	본 사업은 문화관 광부·한국관광공 사 광역관광기본 계획에 반영된 사 업으로 2013년부 터 추진 예정
	국비	3,278.0	0.0	500.0	1,389.0	1,389.0	0.0	
	도비	984.0	0.0	150.0	417.0	417.0	0.0	
	군비	2,294.0	0.0	350.0	972.0	972.0	0.0	
	민간	0.0	0.0	0.0	0.0	0.0	0.0	
효석문학 100리길	계	225.2	0.0	112.6	112.6	0.0	0.0	국·도비 예산 확 보 및 자체예산 확보 예정
	국비	112.6	0.0	56.3	56.3	0.0	0.0	
	도비	56.3	0.0	28.2	28.2	0.0	0.0	
	군비	56.3	0.0	28.2	28.2	0.0	0.0	
	민간	0.0	0.0	0.0	0.0	0.0	0.0	

[10]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 해당 없음

- 평창군 일원의 특구 대상지역은 주로 도심이나 신설도로와 떨어져 있는 산간지역으로 토지투기의 우려가 없어 별도의 토지거래 등에 대한 조치가 불필요한 지역임.

[11]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

-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2]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 예정

[13]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예정)

- 예정

[1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 해당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평창군 특구계획은 토지이용변경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해당사항 없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7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15] 조례로 정할 주요 특례규제 세부내용

- 평창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붙임서류]

□ 특화사업별 필지 조서

□ HAPPY700 자연휴양림 사업 필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봉평면 무이리	산81	임야	457,983	평창군
2	봉평면 무이리	산204-1	임야	87,642	평창군
계	총 2필지			545,625	

□ 효석문학의 숲 사업 필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봉평면 창동리	산139	임야	509,194	평창군
2	봉평면 창동리	산139-1	임야	7,400	평창군
계	총 2필지			516,594	

□ 오대산 치유명상센터 사업 필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진부면 동산리	24	임야	4,664	종교단체
계	총 1필지			4,664	

□ 산림문화 테마파크 사업 필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방림면 계촌리	산1010-1	임야	7,400(일부)	군유지
계	총 1필지			7,400	

□ 숲속 비밀의 정원(수목원) 사업 필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1	방림면 계촌리	산305	임야	3,000	권혁정
2	방림면 계촌리	산303	임야	4,000	국유지(산림청)
3	방림면 계촌리	산300	임야	2,221	국유지(산림청)
4	방림면 계촌리	산299	임야	731	국유지(산림청)
5	방림면 계촌리	산298	임야	5,355	장광석
6	방림면 계촌리	산296	임야	4,000	이상열
7	방림면 계촌리	산294	임야	1,786	국유지(산림청)
8	방림면 계촌리	산278	임야	1,247	국유지(산림청)
9	방림면 계촌리	산277	임야	714	국유지(산림청)
10	방림면 계촌리	산268	임야	3,200	국유지(산림청)
11	방림면 계촌리	산267	임야	3,699	국유지(산림청)
12	방림면 계촌리	산266	임야	3,200	국유지(산림청)
13	방림면 계촌리	산265	임야	4,200	정정자
14	방림면 계촌리	산227	임야	4,096	이재형
15	방림면 계촌리	375	전	1,256	박금옥
16	방림면 계촌리	374	전	2,949	이상열
17	방림면 계촌리	373	대	2,145	이상렬
18	방림면 계촌리	371	전	314	이두희
19	방림면 계촌리	370	전	625	이상렬
20	방림면 계촌리	369	대	327	이귀석
21	방림면 계촌리	354	전	1,200	김맹식
22	방림면 계촌리	352	전	1,788	김현숙
23	방림면 계촌리	351	전	942	김지호
24	방림면 계촌리	350	전	1,421	김현숙
25	방림면 계촌리	313	전	893	정순화
계	총 25필지			55,309	

관계법규 발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기업·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